

알기 쉬운 생활법률

Q : 휴업기간 중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현재 2개월째 휴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곧 정상화 될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측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휴업 2개월 동안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측의 사정에 의해 업무대기 상태에 있는 만큼 취업규칙 등에 업무 대기기간 또는 회사측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등에 임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Q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란?

A :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규정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품 목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1.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2년	○ 7년
-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2년	○ 5년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1년	○ 7년
- VTR, 세탁기, 전기청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파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워드 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무선 호출기, 정수기	○ 1년	○ 5년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쥬스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 1년	○ 3년
- 휴대폰, 압력솥, 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 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암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망원경, 현미경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 수가 복사기종에 따 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대(대 형)을 초과한 경우에 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년